

농림축산식품부 공무원 근로재(청소원) 채용 공고

농림축산식품부에서 근무할 공무원 근로자 채용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하오니, 유능한 인재의 많은 응모를 바랍니다.

2023년 1월 4일

농림축산식품부장관

1. 채용분야 및 인원

채용분야	인원	근무예정부서(근무지역)	담당업무
공무원 근로자 (청소원*)	1명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실 (세종특별자치시)	○ 장차관실,420호 회의실 등 청소업무

* 「고용상 연령차별금지 및 고령자고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15조, 제16조 및 고용노동부고시 제2018-12호에 따른 고령자 우선고용직종에 해당

2. 근무조건

- 신분: 공무원 근로자
 - * 상시·지속적 업무에 종사하며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공무원이 아닌 자
- 계약기간: 계약일 ~ 정년(고령자 우선고용직종 만 65세)
 - * 채용일로부터 3개월간 수습 기간을 두고, 수습 중인 자의 업무능력 부족 또는 직무수행 태도 불량 등으로 계속 근로가 어렵다고 인정되는 경우 계약을 해지 가능
- 보수: 월 2,010,580원(세금 공제 전), 정액급식비 14만원(별도)
- 근무시간: 월~금(06:40~15:40), 주 5일, 1일 8시간 근무
- 후생복지: 사회보험(산재보험, 건강보험, 고용보험, 국민연금) 가입 등

3. 응시 자격(판단기준일 : 최종시험 예정일)

가. 기본요건

- 「국가공무원법」 제33조 각호의 결격사유와 「농림축산식품부 공무원직 및 기간제 근로자 등 운영규정」 제11조의 채용결격 사유가 없는 자
- 응시 연령: 공고일 현재 만 18세 이상 만 65세 미만
- 남자의 경우 최종(면접) 시험 예정일 기준 병역필 또는 면제자
- 대한민국 국적을 가진 자

* 복수국적자(대한민국 국적과 외국 국적을 함께 가진 사람을 말함)는 채용제한

【 관련 규정 】

「국가공무원법」

< 제33조(결격사유) >

1. 피성년후견인
2.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자
3.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4.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 기간이 끝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5.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은 경우에 그 선고유예 기간 중에 있는 자
6.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자격이 상실되거나 정지된 자
- 6의2. 공무원으로 재직기간 중 직무와 관련하여 「형법」 제355조 및 제356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자로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 6의3.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 6의4. 미성년자에 대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를 저질러 파면·해임되거나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받아 그 형 또는 치료감호가 확정된 사람(집행유예를 선고받은 후 그 집행유예기간이 경과한 사람을 포함한다)
 - 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
 - 나.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
7. 징계로 파면처분을 받은 때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8. 징계로 해임처분을 받은 때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고용상 연령차별금지 및 고령자고용촉진에 관한 법률」

< 제16조(우선고용직종의 고용) >

- 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라 공공기관으로 지정받은 기관의 장은 그 기관의 우선고용직종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서 고령자와 준고령자를 우선적으로 고용하여야 한다.

「농림축산식품부 공무원직 및 기간제 근로자 등 운영규정」

< 제50조(정년) >

공무원직근로자의 정년은 60세로 한다. 다만, 청소·경비 등 고령자 우선고용직종에 대해서는 65세로 한다.

「농림축산식품부 공무원직 및 기간제 근로자 등 운영규정」

< 제11조(결격사유) >

채용권자는 징계로 해고처분을 받은 때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공무원직근로자등으로 채용할 수 없다.

나. 우대요건(원서접수 마감일 기준)

- 관련분야(청소, 환경미화업무) 유경험자

다. 가점(원서접수 마감일 기준)

- 국가유공자 등 관련 법률에 따른 취업지원대상자

1.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제16조제3항(1호: 10점, 2호: 5점)
2.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9조제1항(1,2,4호: 10점, 3,5호: 5점)
3. 「5.18민주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 제20조제1항(1,2,4호: 10점, 3,5호: 5점)
4.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19조제1항(1,2,4호: 10점, 3,5호: 5점)
5.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7조의9제1항(1호: 10점, 2,3호: 5점)
6.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제33조제1항(1,2호: 10점, 3호: 5점)

※ 2개 이상의 가점 자격을 갖는 경우 본인에게 유리한 것 택일

4. 시험방법

가. 서류전형

- 응시인원이 채용예정인원의 3배수 이하일 때 자격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합격자로 결정하며, 응시인원이 채용예정인원의 3배수 초과인 경우에는 서류전형 기준에 따라 3배수를 합격자로 결정

접수인원	서류전형 방법	서류전형 합격자
3명 이하	자격요건 충족 확인	자격요건 적격자
4명 이상	서류전형 기준* 적용	3명

* 서류전형 기준(응시원서, 자기소개서, 관련 경력 등 심사)에 따른 심사위원의 점수를 합하여 고득점자 순으로 선발(동점자가 있을 경우 추가 합격)

나. 면접시험(서류전형 합격자에 한함)

- 서류전형 합격자를 대상으로 개별면접을 통해 직무수행에 필요한 능력 및 적격성을 상·중·하로 종합평가

평정요소 : 국가기관 근무자로서 정신자세, 전문지식과 경험수준, 의사표현의 정확성과 논리성, 예의·품행 및 성실성, 적극적 업무자세 등

- 위원의 과반수가 평정요소 5개항목 중 2개이상을 “하”로 평정하였거나, 위원의 과반수가 어느 하나의 동일한 평정요소에 대하여 “하”로 평정한 때에는 불합격

- 불합격 기준에 해당되지 아니한 자 중에서 평정성적이 가장 우수한 자를 최종합격자로 결정

5. 시험 일정

구 분	일 정	내 용
모집 공고	1.4. ~ 1.11.	○ 농림축산식품부 홈페이지, 인사혁신처 나라일터
원서 접수	1.4. ~ 1.11.	○ 농림축산식품부 운영지원과 서무계 ※ 이메일 및 등기우편접수(마감일 도착분에 한함)
서류전형 합격자 발표	1.13.(심사)1.16.(통보)	○ 농림축산식품부 홈페이지 게시 및 개별 통보
면접시험	1.18.(예정)	○ 농림축산식품부 회의실(추후 통보)
최종 합격자 발표	1.19.(예정)	○ 농식품부 홈페이지 게시 및 개별통보

※ 상기 일정은 응시인원, 시험장 사정 등에 따라 단축 또는 연장 가능

- 면접시험 장소 및 일시 등은 서류전형 합격자 발표시 안내
- ※ 신분증을 지참하고 면접시험 30분전 까지 도착하여야 하며, 면접개시 시간 내 미도착시에는 불참처리
- ※ 서류전형 합격자 중 이메일 접수자는 면접시험 당일 응시원서(원본) 및 기타서류 지참·제출
- ※ 「감염병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41조에 의거 코로나-19 확진자 및 자가격리 대상자 등은 면접심사 응시 불가
- 근무시작일(예정) : 신원조사 등 완료 후('23. 2. 1. 이후)
- ※ 신원조사, 경력검증, 건강검진 등 결과 접수 후 결격사유 없을 시 계약 및 근무 개시
- ※ 근무시작일(예정)은 변동 가능하며 개별 통지 예정

6. 응시원서 접수

가. 접수기간

- 2023. 1. 4.(수) ~ 1. 11.(수) 18:00까지

나. 접수방법

- 접수방법 : 전자우편(e-메일) 또는 우편(등기) 접수
 - 전자우편(e-메일) 접수: 제출서류를 스캔 후 첨부하여 csj119@korea.kr로 제출

* e-메일 제출시 제목을 “공무직 청소원 응시원서(성명 ○○○)”로 표시

- 우편(등기) 접수: (30110) 세종특별자치시 다솜2로 94 농림축산식품부 운영지원과
채용담당자 앞

* 봉투에 “응시원서 재증” 기재

* 우편 접수시 마감일(1. 11일, 수) 18:00까지 도착분에 한함(택배 및 퀵서비스 불가)

○ 제출서류의 미비 등으로 인한 책임은 전적으로 응시자가 지게 됨을 유의

다. 접수 및 근무 관련 문의 : 농림축산식품부 운영지원과(044-201-1297)

라. 면접시험 일시 및 장소 : 서류전형 합격자에게 개별 통보

7. 제출서류

구 분	내 용
1. (필수) 응시원서 1부	○ 응시원서에 기재된 사항은 임의로 수정하지 말 것(별지서식 1) * 작성요령을 참고하여 응시자의 부주의로 인한 잘못된 기재나 표기로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유의
2. (필수) 자기소개서 1부	○ 각 A4 2매 이내로 작성(별지서식 2)
3. (필수) 운전경력증명서 1부	○ 음주운전 이력확인용으로 운전면허 미취득자도 발급 가능 ○ 공고일 이후 경찰서에서 발행된 것에 한하며, 교통사고 경력 조회기간과 법규위반 경력 조회기간을 반드시 전체로 발급 ※ 정부민원포털 민원24(www.minwon.go.kr)에서 출력하거나, 경찰서에서 발행 ※ (불인정사례) 공고일 이전 발행된 증명서인 경우, <u>조회기간이 전체가 아닌 경우</u>
4. (필수) 주민등록 초본 1부	○ 남자의 경우 “ 병역사항 포함 ”으로 발급
5. (필수) 개인정보제공(이용)동의서 1부	○ 자필 서명하여 제출(별지서식 3)
6. (필수) 자격요건 검증 동의서 1부	○ 자필 서명하여 제출(별지서식 4)

구 분	내 용
7. 경력(재직) 증명서 각 1부	○ 해당자에 한함 ○ 아래의 사항이 포함되도록 증명서에 정확히 기재 ① 근무기간, ② 업체명(주소, 연락처), ③ 직위, ④ 담당업무, ⑤ 근무형태 (예시) ①2.1.21~13.1.20 ②(주)00 ③사원 ④000청소 ⑤상근 ○ 발급확인자 연락처 포함(미포함시 하단에 별도 기재) ※ 경력증명서 기입내용은 서류전형 시 평가요소이므로 기입이 누락되거나 불명확하게 기입된 경우 응시자에게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음을 유의
8. 자격증 사본	○ 해당자에 한함
9. 국가유공자 등 취업지원대상자 증명서 등 관련증명서 1부	○ 해당자에 한함

※ 서류제출 시 유의사항

- 1) 응시원서를 제외한 모든 서류의 서명란에는 성명을 알아볼 수 있도록 반드시 자필로 서명
- 2) 외국어로 발급된 증명서일 경우 반드시 국문 번역문을 함께 첨부

7. 기타사항

- 채용예정분야에 대하여 적격자가 없을 경우 채용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 응시원서 착오 기재 또는 누락, 연락불능, 제출서류 미비 등으로 인한 불이익은 전적으로 응시자의 책임이므로, 응시원서 기재사항 및 제출서류를 착오없이 제출·작성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합격자 통지 후라도 신원조사, 경력검증 등으로 응시원서 기재사항 또는 제출서류가 허위로 판명되거나 채용예정분야 업무 수행에 부적격할 것으로 확인되는 경우, 합격을 취소하거나 채용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1조에 따라 응시자(확정된 채용대상자 제외)는 최종합격자 발표 다음날로부터 3개월 이내 [별지서식5]를 작성·제출하여 채용서류를 반환 청구할 수 있으며, 반환 청구기간이 지난 서류는 「개인정보 보호법」에 따라 파기됩니다.
- 서류전형 및 면접시험에 대한 채점기준 및 채점결과 등은 공개하지 않습니다.
- 본 시험계획은 불가피한 사정에 의하여 변경될 수 있으며, 변경된 사항은 변경공고 또는 개별 통지로 안내할 예정입니다.
- 외국어로 기재된 증빙자료(경력증명서 등)의 경우, 반드시 한글번역본을 첨부하여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 최종합격자의 계약포기, 합격취소 등의 사유 발생시에 합격자 발표일로부터 3월 내에 불합격기준에 해당하지 아니한 자 중에서 차순위로 평정성적이 우수한 자를 추가합격자로 결정할 수 있습니다.
- 기타 상세한 내용은 농림축산식품부 운영지원과(차수진, ☎ 044-201-1297, csj119@korea.kr)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별지서식 1]

응시원서

응시분야	공무직 근로자(청소원)	응시번호	기재하지 않음
------	--------------	------	---------

인 적 사 항	성 명	한 글		생년월일	
		한 자			
	현 주 소	(우:)			
	이 메 일			병역사항	필, 면제, 미필
					복무기간(○년○월) 또는 면제사유
휴대전화			비상연락처		

학력 사항	학위 등		수학구분	
	학교명 기재하지 않음		졸업/휴학/수료/중퇴	
	학교명 기재하지 않음		졸업/휴학/수료/중퇴	

경력 사항	근무기관	근무기간	근무부서	담당업무 (차종/인승)	퇴직사유

자격 증	자격증명	취득(예정)일	자격검정기관

우대 사항	우대사항	관련번호	발급일자	발급기관명

위 기재 사항은 사실과 틀림이 없습니다.				
2023년 월 일				
작성자 :				(서명)

응시원서 작성요령

1. 응시원서는 반드시 소정 양식을 다운 받아 한글로 작성하여 제출
2. 응시원서 작성시 응시자 부주의로 인한 잘못된 기재나 표기는 **응시자 본인의 불이익**이 됨
3. 『응시원서』는 아래의 《작성요령》에 따라 작성함

《작 성 요 령》

- ① 주소·휴대전화 : 주소는 현재 거주하는 곳을 기재하며, 연락처는 긴급연락이 가능하도록 정확히 기재
 - ② 학력 : 최종학력, 학위만 기재, 졸업 외에 휴학·수료·중퇴인 경우도 기재
 - ③ 경력 : 행정기관, 민간회사 등 근무경력을 기재
 - * 직위(급), 담당업무, 근무기간 등을 정확히 기재
 - * 기재 공간이 부족한 경우 별첨으로 작성 가능
 - ④ 자격 : 해당 자격증명을 기재하되, 해당 자격증 사본 제출
 - ⑤ 우대사항 : 해당자만 기재
- 「※응시번호」란 : 응시자는 기재하지 마십시오.

[별지서식 2]

자 기 소 개 서

응시분야	공무직 근로자(청소원)	응시번호	기재하지 않음
(유의사항) 작성 시 출생지, 부모직업 등 개인 신상을 직·간접적으로 파악할 수 있도록 기재할 경우 불이익(감점)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지원동기, 생활신조와 가치관, 성격의 장·단점, 직장구성원으로 바람직한 태도, 대인관계, 취미활동, 특기사항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작성 ※ A4용지 2매 이내로 한글을 사용하여 작성 ※ 휴먼명조체 13 Point, 줄간격 160%, 편집용지 좌우 여백은 각각 20mm, 상·하·머리말·꼬리말은 각각 12.7mm로 작성(보고서 매 장마다 쪽번호 부여)			

2023. . .

작성자: (서명)

농림축산식품부 운영지원과는 공무원 근로자 신규채용을 위해 아래와 같은
개인정보를 수집합니다.

1. 개인정보 수집 · 이용목적

- 공무직 근로자의 채용심사를 위해 필요한 본인확인 및 심사자료

2. 개인정보 수집 · 이용 항목

- 항목 : 성명, 생년월일, 주소, 연락처, 학력 · 경력 · 자격사항, 취업지원
대상자 여부 등
- 고유식별정보 : 주민등록번호

3. 개인정보의 보유 및 이용기간

- 채용심사기간, 최종합격자 발표후 3개월간 보유·이용·보관됩니다.

4. 동의 거부 및 동의 거부시 불이익 내용

- 개인정보 수집 동의를 거부하실 수 있습니다. 다만, 동의하지 않을 경우 채용심사 대상에 포함되지 못합니다.
- 공무원근로자 채용 신청에 필요한 개인정보는 채용업무 이외의 다른 목적으로 사용하지 않습니다.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에 동의하십니까? 동의함(☒), 동의하지 않음(☐)

고유식별정보(주민등록번호) 처리에 동의하십니까? 동의함(), 동의하지 않음()

2023년 월 일

성명 : (서명) 주민번호 :

[별지서식 4]

자격요건 검증을 위한 동의서

성명		응시직군	공무직 근로자(청소원)
생년월일	. . .		

또한 본인이 서명.날인한 동의서의 복사본은 자료의 진위 검증을 위해서 원본과 동일하게 유효하다는 것을 인정합니다.

본인은 농림축산식품부에서 시행하는 공무직 근로자 공개채용시험 응시자로서 농림축산식품부가 실시하는 경력, 자격증 또는 기타 제출한 자료의 진위검증을 위한 확인서 발급에 동의합니다. 이를 위해 「개인정보보호법」등에 의해 보호되고 있는 각종 개인정보 자료를 동법 제15조 등에 따라 채용담당 업무관계자에게 제공 및 공개.활용하는 데 동의합니다.

2023년 월 일

성명 : (서명)

농림축산식품부장관 귀하

[별지서식 5]

■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별지 제3호서식]

채용서류 반환청구서

접수번호		접수일자
청구인	성명	수험번호
주 소		
반환장소 (주소와 다른 경우 기재)		
반환청구서류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조 및 제4조에 따라 위와 같
이 채용서류의 반환을 청구합니다.

년 월 일

청구인 (서명 또는 인)

○○ 사업장 귀하

공지사항

- 1.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제1항에 따라 신청인이 채용서류의 반환을 요청하면 해당 사업장은 14일 이내에 반환요구서류를 발송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 2.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제2항에 따라 반환요구서류는 특수취급우편물을 통해서 전달받거나, 사업장으로부터 직접 전달받을 수 있습니다.
- 3.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1조제5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조제2항에 따라 채용서류의 반환에 드는 비용을 청구인이 부담할 수 있습니다.